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06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이상휘・박준태・최은석

서일준 • 박상웅 • 이헌승

최수진 • 박성훈 • 이달희

구자근 · 정동만 · 윤영석

한지아 · 김민전 · 김태호

강민국 • 김장겸 • 김정재

이철규 의원(19인)

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반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음.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부문에서 글로 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미국, EU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어 향후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안 제5조).
- 다.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거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 마.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의 국산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 업,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 을 위한 지원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 사.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지원, 입주기업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지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아.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 관 지정제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제도,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의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생산보조금의 지급,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등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8조까지).
- 차.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특별 회계를 설치함(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이차전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개발·실증·설계·제작·생산·가공·공급·서비스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 이차전지 완제품
 - 나.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소재
 - 다.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망간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광물
 - 라. 이차전지 관련 부품 · 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 마. 이차전지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유지보수·이력관리 등 관련 서비스
- 2.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란 이차전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통

- 하여 국내외 투자, 이차전지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 전지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이차전지산업 발 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차 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 2. 이차전지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 3.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사항
- 4.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 및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5.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 6. 이차전지산업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 7.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 보호에 관한 사항
- 8. 이차전지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9. 이차전지산업의 연구 ·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0.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기 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1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혁신 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①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4.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에 관한 사항
 - 6. 제35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 7. 제36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특례에 관한 사항
- 8.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차전지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공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9.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거나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

-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 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8조(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이차전지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이차 전지산업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 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차전지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이차전지산업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된 이차전지산업 분야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이차전지산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 제도의 연구 · 조사 · 기획
 - 2. 이차전지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원료 · 소재 국산화 지원

- 5. 이차전지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제품 표준의 개발 · 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 7. 이차전지산업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8.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 연구개발 등 지원
- 9.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제13조(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정부는 이차전지산 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용수· 폐수·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 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 3.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 4.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 제14조(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2.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실증기반 구축사업
 - 3.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 4.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등 사업화 지원사업
 - 5.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 · 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의 국산화 등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과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추천
 -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ㆍ자문

-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제17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정부는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 연구
 -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3.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과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 5.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 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이차전지산업과 관

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차전지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시범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 제20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
-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 6.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신 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의 지역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라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이차전지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 2.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체육시설·주택 등 각종 주거환경 개선시설의 설치
-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내 설비투자
-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8.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혁신발전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한다.
 -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5.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입주기업체의 투자·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한다.
 - ④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이차전지산업과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 2. 이차전지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차전지산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 3. 이차전지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차전지산업의 영위를 위한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내 토지 등 취득비용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수도 권 외의 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 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한다)에 대

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정부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 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연대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 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 다.
 - ③ 그 밖에 연대협력모델의 구축·발굴 및 지원과 실태조사·수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3. 입주기업체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체계적 육성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세부 지원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 제26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2.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관련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
- 2.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
- 3. 재직자의 직업교육, 능력개발 및 향상
- 4.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
- 5.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확충
- 6.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 7. 해외 및 수도권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8조(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교육훈련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은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생의 정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정부는 이차전

지산업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특례

- 제31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 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제14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
 - 2. 제22조에 따른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 3. 제23조에 따른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14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

- 2. 제21조에 따른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 3. 제22조에 따른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 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2.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운영
 - 3.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의 핵심적인 필요 인력에 대한 국가 핵심인재 지정 및 지원
 - 4.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내 원료·소재·부품·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및 부지 할당과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
 - 3.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6조(이차전지산업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해당하는 이차전지산업 분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제37조(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생산보조금의 지급)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생산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생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주요 원자재의 수입대체 또는 국산화에 따른 가격차이 보전 비용
 - 2. 폐수처리시설 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고비용 요소에 대한 운영 비용
 - 3. 공급망 취약 품목의 내재화 또는 국내 생산 전환에 따른 초기 부 담 비용
 - 4. 친환경 인증 및 공정 개선을 위한 부대 비용
 - ② 생산보조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 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

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1. 국내에 이차전지산업 관련 원료·소재·부품·장비 생산시설을 갖출 것
- 2. 산업용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 총 생산비용의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공정을 보유할 것
- 3.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할 것
- 제40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① 이차전지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간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 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것
 - 2. 근로소득 수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 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1조(이차전지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원료·소재·부품·장비의 생산·가공·제작을 위한 공장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제작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을 할수 있다.

- ②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주무부처의 장은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 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이차전지 또는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생산·가 공·제작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3조(중소·중견기업의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특별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또는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요건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 2. 시장수요・판로・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 3. 연구개발 지원
- 4. 자금의 보조・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 5.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 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4조(이차전지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관리주체와 이 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차 전지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 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 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7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

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 · 분석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활용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원)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관련 병역지정업체 등의 종사자가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

- 제49조(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 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이차전지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 수한 기술료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특별회계 보유재산의 매각 또는 운용수입
 - 6.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 2.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를 위한 사업
 - 3.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 4.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지원사업

- 5.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사업
- 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
- 7. 이차전지산업 생산보조금 지급사업
- 8.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9. 특별회계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 10.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③ 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제8장 보칙 등

제5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관 리기관 및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관 리기관 및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이차전지혁신클 러스터 관리기관 및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2. 제5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